
	규정	문서번호	TWP-B220	
		제정일자	2018. 07. 09.	
	대학홍보 위원회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페이지	1/3

작성부서	산학입학처	제정일자	2018. 07. 09.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산학입학처장	기획예산처장	교무학생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P-B220	
		제정일자	2018. 07. 09.	
	대학홍보 위원회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페이지	3/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교·내외 홍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홍보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대학홍보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2. 대내 외 홍보자료의 발굴,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사항
3. 대학홍보와 관련한 책자, 영상제작 등 홍보물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전문위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의 전문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9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